

1. 개정이유

붕괴위험지역을 지정 및 고시하는 경우 국민들이 토지이용계획에서 붕괴위험지역 지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지역의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도록 하여 국민 편의를 개선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붕괴위험지역 지정 시 지형도면 고시 의무화(안 제2조)

- 1) 현행 붕괴위험지역 지정 시 지형도면을 열람할 수 있게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고시해야 할 의무가 없어 국민들이 토지이용계획에서 붕괴위험지역 지정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등 불편 초래
- 2) 붕괴위험지역 지정 시 고시해야 하는 항목에 지형도면(축척 5,000분의 1 이상)을 추가함

나. 계측기기 성능검사 제도의 일몰조항 폐지(현행 제18조 삭제)

제12조에 따른 계측기기 성능검사에 대한 타당성 검토 결과 규제의 존속이 필요한 것으로 결정되어 본 조문을 폐지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 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고시하고, 붕괴위험지역의 지형도면(축척 5,000분의 1 이상의 지형도면을 말한다)을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”를 “고시”로 하고,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붕괴위험지역의 지형도면(축척 5,000분의 1 이상의 지형도면을 말한다)

제18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붕괴위험지역 지정·고시 등) ① (생략) ②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붕괴위험지역을 지정한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<u>고시</u> 하고, <u>붕괴위험지역의 지형도면(축척 5,000분의 1 이상의 지형도면을 말한다)을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</u> 하여야 한다. 1. ~ 5. (생략) <u><신 설></u> ③ (생략) <u>제18조(규제의 재검토)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계측기의 성능검사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u>	제2조(붕괴위험지역 지정·고시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<u>고시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5. (현행과 같음) 6. <u>붕괴위험지역의 지형도면(축척 5,000분의 1 이상의 지형도면을 말한다)</u> ③ (현행과 같음) <u><삭 제></u>